
정기통계품질진단 사업설명

2020. 1.





목 차

I . 사업개요	1
II . 세부수행내용	2
1. 사업내용	2
2. 세부 과업추진사항	9
3. 추진일정	15

I

사업개요

1. 사업명 : 정기통계품질진단 위탁사업

2. 사업목적

- 정부정책 수립·평가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 국가통계의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진단하여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와 4기('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프레임에 따라, '20년 73종의 통계에 대해 품질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통계 관리 및 품질 향상 도모

<참고> '제4기('20~'2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개선 기본계획('19.2.)

◇ 통계작성기관이 소관 통계에 대한 통계정보보고서(통계방법 및 품질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이 심층진단, 통계청이 최종 확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민간기관의 전문지식을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적용함으로써 통계 작성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진단결과 도출

3. 사업범위

- 사업기간 : 2020년 2월(계약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사업내용: 주요 국가 통계 73종에 대한 품질진단

1

사업내용

- ◆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지원 및 관리
- ◆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른 품질진단 수행
- ◆ 진단결과보고서 및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가.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지원 및 관리

- 품질진단 기초보고서인 「통계정보보고서」 가 지침*에 따라 작성 될 수 있도록 작성기관 지원

* 「통계정보보고서」 작성지침은 통계청에서 제공

- 미작성 또는 미흡한 작성기관은 완성도 높은 통계정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관리

-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완료여부 확인
 - 통계정보보고서 작성항목의 충실성과 적합성 검토 후 작성기관에 보완 요청
 - 필수 작성 항목 누락여부 점검 및 보완 요청·지도
 - 해당 항목과 작성내용의 일치여부, 불일치 시 수정 요구

나.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른 품질진단 수행

1) 일반사항

- 2020년 국가통계품질관리 매뉴얼 사전 숙지
- 과거('06년~'19년)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통계간행물 등 검토
- 통계청 승인사항(작성방법, 조사표, 결과표 등) 준수 여부 확인
- 진단통계의 메타정보 작성실태 확인

2)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한 품질진단

- ① 작성기관의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절차에 대한 품질상태 점검
 - 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국가통계품질관리 매뉴얼의 점검표에 따라 연구진이 품질지표*별로 정량·정성적 평가 실시
 - *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
- ② 작성기관 환류를 통해 진단 결과 보완(2회 이상)
 - 「통계정보보고서」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평가결과 피드백을 위한 작성기관 방문*(1회 이상)
 - * 작성기관 최초 방문 시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독려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기념품 배부
 - 「통계정보보고서」에 오류 수정 및 추가 정보 작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보완 요청

3) 자료수집 체계 점검

-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등에 대하여 현장면담 및 근거자료 확인을 통하여 관리체계를 점검
 - 자료수집체계의 주요 관련자(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시군구 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면담 실시(1회 이상, 3명 이상)
 - 근거자료* 확인
 - * 조사원 교육자료, 조사명부, 조사표 원본, 현장조사 파라데이터 등
-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조사 조사원의 숙련 정도, 태도, 성실도, 자료수집방법 점검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4) 표본전문가에 의한 표본설계 정밀진단: 통계진홍원 실시

- (표본조사)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목표오차와 표본규모, 표본추출 방식, 표본선정 또는 배정방식, 추정식, 주요 항목별 공표범위 등을 점검
 - (전수조사)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모집단)이 잘 정의되어 있는지, 전수조사가 타당한지, 표본조사로 변경가능한지 등을 검토

5)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 통계작성, 서비스 등 통계작성 및 제공에 대한 미래 고객요구 수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점검
-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 주요 이용자의 이용현황 및 요구 사항을 분석

*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소집단을 형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계획적이면서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대일 면접에 비해 정보 획득이 신속하고, 함께 모여 토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힌트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확실히 표출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 정성적인 이용자 조사기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 전문이용자 및 일반이용자로 구성된 FGI 실시(1회, 최소 5명)
- 이용자 요구사항, 불만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

6) 마이크로데이터(MD) 품질 점검: 통계진흥원 실시

- 통계 작성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제출 또는 방문 확인하여 점검
- (절차적 기초점검) MD작성체계 및 메타자료 수집 점검
- (실질점검: 일치율 점검) KOSIS 공표 항목 기준 집계표 일치율 점검
-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정리

7) 공표자료(KOSIS) 오류 점검

- 보도자료, 통계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 등 최근 공표자료 수집 및 오류 점검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통계수치의 정확성 등)
- 오류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정리

8) 작성기관 간담회 실시

- 진단연구진 주관으로 통계청과 작성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품질진단 결과 확정
- 연구진이 작성기관 담당자에게 품질진단 결과를 설명하고, 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가 현실적으로 작성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 통계별 진단결과와 개선과제별 개선방안을 해당 통계 작성기관에 환류
- 작성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단결과보고서 최종 확정

다. 진단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진단결과보고서 작성

* 통계청(품질 관리과) 홈페이지 「진단결과보고서」 참고

-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작성) 완성된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하여 정밀진단,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자료수집체계 점검 등 작성 · 정리
 - 통계정보보고서를 「진단매뉴얼」에 따라 품질지표별로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와 종합적인 결과 작성
 -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개선사항 포함) 작성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결과(개선사항 포함) 작성
-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작성) 통계품질상태를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등의 차원에서 진단한 분석 결과를 기술
-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진단결과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표본설계, 무응답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우수사례 제시) 진단결과 해당통계의 우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진단결과보고서 제출

- 진단결과보고서를 통계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간행물(PDF파일)로 등재할 예정으로 파일로 제출

라.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진단에 활용한 통계정보보고서 중 작성기관과 협의하여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를 작성
 -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파일로 제출

2

세부 사업추진사항

가. 연구진 구성

연구진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구성

<연구원 자격>

통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이나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통계의 작성 · 보급 · 이용 또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이론과 방법 등에 관한 연구 · 개발 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
- 통계 분야, 품질관리 분야, 그밖에 경제 · 사회 · 인구 등 통계품질진단 대상인 통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자
 -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통계 1종당 연구원 1명과 연구보조원 1명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연구원이 연구보조원을 두지 않을 경우, 연구비 산정은 연구원의 투입률을 조정하여 비용을 산정하되, 연구보조원의 통계 1종당 단가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함
- 연구원(연구보조원 포함)은 1명당 최대 2종의 통계에 대해 품질 진단 수행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2종 초과 조정 가능
-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책임연구원 포함)의 진단업무 보조 및 작성 기관의 통계정보보고서 보완 업무 수행

나. 진단 연구진 교육(2월): 통계진흥원 실시[연구진 필참]

- 목적 :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위탁사업의 착수에 앞서 연구진을 대상으로 진단기법 교육, 관련 정보공유 및 발전전략 모색
- 수행사항 : 2020년 품질진단 수행지침 교육 실시
 -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및 진단 방향 교육
 - 통계정보보고서 작성지침/평가지침 학습 및 시스템 사용법 교육
 - 통계정보보고서 모의 진단 실시 및 진단 결과 공유
 - 사업수행전략 모색 및 사업수행 노하우 공유

다. 착수보고회 실시(3월 초): 연구진 참석 불필요

- 통계청과 진단대상통계 작성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통계품질 진단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설명

라. 진행사항 보고회 실시(4월, 6월, 8월 등): 연구진 참석 불필요

-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현황, 품질진단 현황,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 진행여부 등 보고
 - 8월은 전체 진단 수행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 실시
 - * 7월, 10월은 개별통계 진단결과보고회 실시
- 진단사업의 문제점 및 자연사유, 수행절차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모색

마. 통계(73종)별 자료수집체계 점검 실시(5~8월)

- 목적 :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료수집 오류(비표본오차 등)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발생한 또는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
- 대상 : 통계(73종)별로 조사기획자(1명), 조사관리자(1명), 조사원(1명) 등(1회 이상, 3명 이상)

바. 표본설계 점검 실시(5~8월): 통계진흥원 실시

- (기본진단) 조사통계(미정)와 별도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있는 보고·가공통계에 대하여, 표본설계 부문을 전반적으로 검토
- (심층진단) 기본진단을 통해 심층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 모집단, 표본추출틀, 목표오차, 표본규모, 가중치, 추정식, 주요 항목별 공표 범위 등 표본설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정밀 검토하여,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점검(외부전문가 활용)

사. 통계(73종)별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실시[3~5월]

- 개별 통계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s, FGI) 실시
 - 목적 : 해당 통계에 대한 만족수준과 요구사항 반영수준을 측정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과제를 도출
 - 대상 : 통계(73종)별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이용자 리스트를 확보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에 직접 활용한 경험이 있는 주요 이용자 5명 선정
 - 원거리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참석이 곤란한 참석대상자에 대하여, 통계청과 사전 협의 후 방문면접 가능(단, 참석대상자의 20% 이내 가능)
 - 참석대상자 중 동일기관 참석자는 2명 이내(단, 참석대상자의 소속부서는 상이해야 함)

아.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3~6월]: 통계진흥원 실시

- (절차적 기초점검) 작성기관의 MD작성체계(작성주체, 보유기관 등) 파악 및 메타자료 수집 점검
- (실질점검: 일치율 점검) KOSIS 공표 항목 기준 집계표 일치율 점검

자. 통계(73종)별 공표자료 오류 점검 실시(3~5월)

- 목적
 - 주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이러한 오류의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
 -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본정보가 통계간행물에 충분히 제공되는지 여부 점검
- 점검방법
 - KOSIS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표와 작성기관이 발표한 통계표간 비교·점검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경우 작성기관에서 제공한 수치와 국제기구 제공 수치와 비교·점검
- 점검 내용
 -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통계수치의 정확성, 국제기구 제공자료와 국제기구의 간행물 또는 DB와의 일치성
 - 통계표 형식의 적절성, 단위 표기의 적절성, 통계표의 병합 및 재구성 필요성, 주석 및 출처표시의 적절성

자. 통계(73종)별 작성기관 간담회 실시(6~10월)

- 통계(73종)별 진단결과와 개선과제별 개선방안을 해당 통계 작성기관에 환류하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종 확정
 - 통계청과 협의하여 6~9월 기간에 나누어 실시
 - 통계청(품질관리과), 통계진흥원 및 통계작성기관(부서장 및 담당자) 3자가 참석하여 협의
 - 작성기관 간담회 최소 일주일 전 진단결과보고서 작성기관에 송부

카. 통계(73종)별 진단결과보고회(7월, 10월)

- 통계(73종)별 진단내용과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등 진단결과 보고
 - 2종 이상의 통계를 담당하는 연구원의 경우, 7월(1차)에 1종은 반드시 결과 보고 완료*
- * 단, 추진일정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통계별 진단결과보고서 제출(통계정책관리시스템 등록)
 - 통계청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수용

타.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통계별 진단결과보고서 제출
 -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파일로 등록

3

추진일정

사업기간 : 2020년 2월(계약일) ~ 11월 30일

사업내용	추진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진 교육 (1박2일)										
착수보고회 (연구진 참석 불필요)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지원 (작성기관 방문)										
품질진단 수행 (자료수집 체계 점검) (FGI 실시) (표본설계 점검)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										
진행사항 보고회 중간보고회 (연구진 참석 불필요)										
작성기관 간담회 실시										
통계별 진단결과 보고회										
완료보고회 (연구진 참석 불필요)										
통계별 최종 진단결과보고서 제출										